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2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18.

발의자 : 이종명 · 경대수 · 권성동
홍문표 · 김종석 · 김세연
곽대훈 · 원유철 · 성일종
김성찬 · 이군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·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음.

그러나 준·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·재판중인 수사경력자료만 조회할 수 있고 19세 미만에 적용되는 ‘소년부 송치’ 사건은 조회할 수 없어 임용 전 범죄 관련 기록 일부에 대한 검증이 제한되므로 자질 결함자가 임용될 우려가 있음.

한편 중사 이하 부사관의 인원 대비 사고자 비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폭행·사기·성범죄 등 자질 결함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바, 준·부사관 및 군무원 또한 장교와 동일하게 임용 전 모든 범죄 및 수사기록 등을 검증하여 품행이 올바른 인원을 선발할 수 있

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조 제1항 제7호).

법률 제 호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 중 “각군 사관생도의 입학”을 “장교·준사관·부사관·군무원의 임용”으로, “장교의 임용에”를 “그 후보자의 선발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	제6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생 략) 7. <u>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</u> 필요한 경우
8. ~ 10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장교·준사관·부사관·군무원의 임용----그 후보자의 선발에-----</u> 8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